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경 기 도 교 육 청
2025. 2.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행정담당]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중에서〉

☐ 누리과정비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누리과정비 추가지원금	5세	4~5세	단가: 5만원

〈목차〉

I. <u>추진배경 및 목적</u>	1
II. <u>지원근거</u>	1
III. <u>지원내용</u>	2
☐ 2025학년도 지원내용	2
☐ 세부 지원내용	2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3
☐ 지원기간	4
IV. <u>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u>	4
☐ 유아학비	4
☐ 방과후과정비	9
☐ 업무처리절차	11
V. <u>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u>	11
☐ 지원대상	11
☐ 지원금액 및 산정방식	13
☐ 지원절차	13
VI. <u>4~5세 누리과정비(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u>	14
☐ 지원개요	14
☐ 기타안내사항	14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I 추진배경 및 목적

-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보육료 단계적 지원 확대
-
-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4~5세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23. 1. 30.)에 따라 학부모 경감을 위해 '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 지원대상 5세('24년) → 4~5세('25년) → 3~5세('26년)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II 지원근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5-5호, 2025. 2. 3.)

Ⅲ 지원내용

□ 2025학년도 지원내용

(단위: 만원)

구분	3세			4~5세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계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추가지원	계
공립유	10	5	15	10	5	5	20
사립유	28	7	35	28	7	5	40
어린이집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외 소득요건 등 조건에 따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세부 지원내용 ※ 2025. 3. 1.부터 적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금액

(단위: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금액(원/월)		
			공립유	사립유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19. 1. 1. ~ 2019. 12. 31.	100,000	280,000	
	4세	2020. 1. 1. ~ 2020. 12. 31.			
	3세	2021. 1. 1. ~ 2022. 2. 28.			
방과후과정비	3~5세	2019. 1. 1. ~ 2022. 2. 28.	50,000	70,000	

※ '2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5-5호, 2025. 2. 3.)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 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금액

(단위: 원)

구분	자격	지원금액 (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 과정비+방과후과정비 (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4~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단위: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금액(원/월)		
			공립유	사립유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4~5세	2019. 1. 1. ~ 2020. 12. 31.	50,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19에 따른 '2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 2025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 방안 ❖
☒ (공립유치원) 유아나이스 시스템 사용
☒ (사립유치원) 유아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
 ※ 단, 시스템 선택 후, **학년도 종료 시(2026년 2월 말)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 불가**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 및 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학년도 기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
☒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자격 정보연계 지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 '13. 3. 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IV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2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 ※ 다만, 해당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8. 1. 1.~'18.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유아학비 지원제외 대상 ❖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 해외체류기간 날짜 기산 시 출국일 포함 ☞ 3. 1. 출국 후 4. 7. 귀국한 A유아의 유아학비 자격은 3. 31.부터 중지 (3. 30.까지 지원 자격 보유)
 -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필요
 - ※ 재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 ▶ 지원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동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22년 1월~2월생 유아'가 입학한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최대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신청: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일할 계산)

변경구분	지원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 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퇴원 전 사회서비스 변경 신청 또는 다닐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후 사회서비스 변경 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가 **일할 계산 될 수 있으므로, 유치원(어린이집) 퇴원 다음날 즉시 변경 신청** 바람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15일 기준으로 계산)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 관련: (보건복지부) 「2025년 보육사업안내」 p.279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중인 경우는 제외

①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구분		지원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 양육수당: 해당 월 미지원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 양육수당: 해당 월 전액 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구분		지원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 양육수당: 해당 월 미지원 · 유아학비: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 양육수당: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유아학비: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학부모 자부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적중단(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 자퇴, 퇴학) 발생 시 학적중단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

○ 지원금 산정

❖ 공통기준 ❖

-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학년도 기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
- ☑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자격 정보연계 지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④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 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및 나이스 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및 나이스 상 자동으로 입학/학적변동일 혹은 교육일수 조정

① 입학 시: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입학일에 따른 지원액 산정 예시(사립유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4일	3월 4일	3월 1일	3월 1일	(입학1)
	3월 4일	3월 4일	3월 4일	
	3월 14일	3월 18일	3월 18일	(입학2)
3월 24일	3월 24일	3월 1일	3월 24일	(입학3)

(입학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4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Rightarrow 280,000\text{원}(\text{입학일 } 3\text{월 } 1\text{일 적용})$

(입학2) 3월 14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Rightarrow 280,000\text{원} \times 14(\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126,450\text{원}$

(입학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4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Rightarrow 280,000\text{원} \times 10(\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90,320\text{원}$

②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단, [붙임1]‘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 학기 중 및 방학 중 유아학비 지원액 산정 예시 ❖

☑ (학기) 3월 14일 ~ 4월 11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280,000\text{원} \times 13(\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117,430\text{원}$

☞ 4월 지원액: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 (방학) 8월 4일 ~ 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공립) 지원액: $100,000\text{원} \times 9(\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29,030\text{원}$

☞ (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 및 출석한 유아 = 100,000원 전액(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 전액(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학적 중단 시: 학적 변동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 계산)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휴학일 경우, 학적 중단 시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 학적 중단 시 ❖

- ☑ 유치원 학적 중단(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 전에 자격 변경 신청 시 신청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지원이 불가함**
- ☑ 유치원 학적중단이 완료된 이후 **타 서비스(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로 자격 변경을 별도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 ※ 신청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부담비용 및 미지급분 등은 **소급지원이 불가함**

❖ 학적 중단 시 유아학비 지원액 산정 예시(사립유치원) ❖

- ☑ (예시1)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학적을 중단한 유아의 지원액
☞ 280,000원×25(교육일수)/30(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 ☑ (예시2) 2월 15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 (교육일수 15일 이상)

- ④ 재량휴업일·방학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학기간 및 졸업 이후 유아학비 지원액 산정 예시 ❖

- ☑ (예시1) 2월 5일에 졸업(방학)한 유아, 2월 20일까지 방과후과정 출석
 - ① 교육과정 시간(09:00~14:00), 15일 이상 출석
 - ☞ (공립) 유아학비 10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미지원
 - ☞ (사립) 유아학비 28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미지원
 - ※ 15일 미만 출석 시, 유아학비 일할 계산
 - ②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출석
 - ☞ (공립) 유아학비 10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지원
 - ☞ (사립) 유아학비 28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70,000원 지원
 - ※ 15일 미만 출석 시,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일할 계산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 해당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항목으로 **우선 지원**
-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 특성화프로그램은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유아학비(교육**

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 지급 불가

※ 시스템 상 급식비는 기타교육비에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방법 및 절차

- ▶ **신 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24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5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됨

※ 유아학비 자격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아학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함

-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자격 생성(지자체 담당 공무원)

- ▶ **인 증**: 유아 보호자의 은행권 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웁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 **청 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신학기 유치원 학적 변동(입학 등)이 많은 관계로 4월에 추가 청구(1회) 실시

- ▶ **지 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미연동(자격 미신청)되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 **정 산**: 유아별 입학·학적변동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 분기 '유아 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방과후과정비

○ 지원대상

-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및 제13조(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 지원기준

-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방과후과정비 전액 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15일)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 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

- 단,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시간 조정 유아가 발생하는 경우, 유아 수시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방과후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일정한 귀가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

-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충족 시 6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 제외

※ 단,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이 되더라도 학부모 부담금 징수하지 않음

- ▶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과정 출석부, 방과후과정 참여 신청서 등 증빙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내용

- ▶ 산정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 지원항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업무처리절차

대상	업무처리
보호자 (학부모)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자격 방문 신청(또는 온라인 신청) ▶ 아이행복카드 발급 ▶ 유치원·어린이집에 유아 입학 ▶ 유아학비 지원금액을 차감한 수업료만 유치원에 납부 ▶ 유아학비 지원금액 학부모 청구
주민센터 시군구청	▶ 사회서비스 신규 및 변경 신청시 학부모에게 (변경)기준 및 절차 안내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서비스 자격 결정
유치원	▶ 유아학비 지원 대상·금액·절차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홍보 및 안내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 등록 및 관리 ▶ 입·퇴원처리부 및 출석부를 통한 유아 관리 ▶ 인가정원 범위 내의 유치원 운영 및 유아 등록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을 통해 매 분기(3월·6월·9월·12월·익년 2월) 유아학비 신청 및 정산
교육지원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치원별 유아학비 관리 ▶ 매월 유치원으로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범위를 벗어난 청구 유무 확인) ▶ 도교육청으로 유아학비 배정액 신청 및 집행내역 제출 ▶ 유아학비 지도·점검 현황 제출
도교육청	▶ 유아학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교육지원청별 유아학비 관리 ▶ 교육지원청으로 유아학비 재배정액 교부 ▶ 유아학비 집행실적 등 관리 및 교육부 정산 보고

V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22년 1~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유예 등 그 밖의 지원대상 포함

❖ 법정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 분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 유의사항 ❖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아학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함
- ☑ 다만, '24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5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 '유아학비지원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청 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지 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출결 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정 산: 유아별 입학·학적변동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다음연도 2월, 유치원)

VI 4~5세 누리과정비(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중 **4~5세**(‘19. 1. 1. ~ ‘20. 12. 31. 출생) 유아
 - ▶ 취학대상 아동(‘18. 1. 1. ~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 4~5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추가지원 금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
 - ※ 예시: 4~5세 유치원 원비(50만원) - 4~5세 정부지원금(40만원: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4~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5만원) = 학부모 부담금 10만원
- 지원항목
 - ▶ 유아학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기간: 1년(2025. 3. 1. ~ 2026. 2. 28.)
- 지원기준: 유아학비와 누리보육료, 양육수당 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지원기준은 유아학비와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
- 지원금 산정: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출결·학적 중단 등은 유아학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 산: 유아별 입학 및 학적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정산
 - ※ 사업종료 후 지자체 교부금 및 추가지원금 정산결과를 교육부 제출 예정
- 집행잔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차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

□ 기타 안내사항

- 4~5세 5만원 추가지원 외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관련 내용은 추후 교육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